#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6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정태호

박홍근 · 김영환 · 최기상

윤호중 • 정준호 • 정성호

김정호 · 강준현 · 조승래

임미애 · 황명선 · 오기형

신영대 · 황정아 · 김성환

서영석・황 희 의위

(2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였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 됨.

이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라 한다)에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의 가입 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출 등)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	
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	
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 공제금	
·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	
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	
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	
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	
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	
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	
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	
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	

시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u><신 설></u> \_\_\_\_\_\_

- 1. ~ 4. (현행과 같음)
-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5(우리아이자립펀드계 좌에 대한 비과세) ① 「아동

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계좌

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우

(이하 이 조에서 "우리아이자 립펀드계좌"라 한다)에서 우리

아이자립펀드계좌의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u>이자소득</u>, 배당소득 및 금융투 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보기된기 시기하다 고기계단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 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계 좌에 납입한 경우 그 보호자적 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